

의안번호	2200806
의 퇴 인	이재관의원
회 답 일	2024. 7. 26.
추 계 번호	24D109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및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 특례시의 정의 확대 :(현행)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개정안) 특례시에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가 관할 구역 내에 없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도시'를 추가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례시의 장이 제 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례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의무·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및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특례시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58조 및 제59조)

- 현행법¹⁾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분류²⁾하고,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제59조 제1항 각 호)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가 관할구역 내에 없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에 추가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례시장이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례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례시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 특례시의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시의 사무처리 비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1) 현행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생략)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나. (생략)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13. (생략)

2) 현행법에 따른 특례시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4곳임([참고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현황)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

[참고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현황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파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자료: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02호